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7일 11시 26분



목차

목차	2
건설기계등록	3
기본사항	3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	3
민원관련 참고사항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**신규등록** ▪ 이전/변경등록 ▪ 말소등록 ▪ 저당권설정등록 ▪ 저당권말소등록 ▪ 등록번호표재발급
- 등록증재교부 ▪ 등록원부발급

기본사항

- 건설기계의 신규(부활)등록이 있는 때에는 취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를 해야 함.
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

- 건설기계신규등록신청서
- 제작증
 - > 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
 - > 부활일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
- 양도증명서
- 세금계산서
- 소음, 배출가스 인증서
- 제원표
- 사용본거지 확인서류

1 자가용

- > 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> 개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)

2 영업용

- >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시설대여임대차계약

- 보험가입증명서
 - > 보험가입의무 장비 : 타이어식 굴삭기, 타이어식기중기,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,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(자주식)
- 차대 일련번호 탁본 3매
- 국민 주택채권 매입필증 : 공금가액의 0.5%
- 정부수입인지 3,000원 1매
-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- 소유자 인감증명서

민원관련 검교사항

- 민원처리기간 : 즉시 (단,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10일)
- 취득세 공급가액의 3.4% (단,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3%)
- 수수료 : 수입증지 4,000원
-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